C - 113 - 2020

- (4) 공사장 주변의 축대나 옹벽에 균열발생 유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.
- (5) 공사장 주위의 배수로가 낙엽, 토사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지반의 융해로 인한 이완 침하로 인한 지하매설물(도시가스, 난방, 통신, 상·하수도, 관로 등)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, 지하매설물의 이설, 위치변경, 교체 등의 작업은 작업 전 관리주체와 업무를 협의하고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7) 지반이완 및 침하로 인한 공사용 차량, 건설기계 등의 넘어짐 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지내력과 평탄성 및 가설도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8) 지하매설물 파손, 공사장 주변 축대나 옹벽 무너짐 및 지반침하 등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.

5.1.2 동절기

- (1) 현장 주변의 일기예보 및 기상특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여 한다.
- (2) 가설숙소,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.
 - (가) 난방기구 주변 유류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
 - (나) 화기 주변 및 출입구 주위에 소화기, 방화사 등 진화장비 비치 여부
 - (다) 전기기계 · 기구의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
- (3) 가설전기의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4) 꽂음접속기, 전선 등 전기용품은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고 전기용량을 초과 등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(5) 흡연장소, 난로 설치장소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설치하고, 화